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26

발의연월일: 2024. 8. 12.

발 의 자:서영교・이해식・황정아

김준형 • 조인철 • 한민수

정태호 · 송재봉 · 오세희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개선이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 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 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자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②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
	등을 보호하여야 할 긴박한 필
	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공사는 금융
	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한
	도를 초과하여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금
	자등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u>수 있다.</u>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	<u>4</u>
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	
[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	
금은 <u>제1항 및 제2항</u> 에 따른	<u>제1항부터 제3항까지</u>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	
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	<u>⑤</u>
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u>제1항</u>	<u>제1항부</u>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	<u>터 제3항까지</u>

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	
려 주어야 한다.	